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279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7. 2. 최두임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: 2024. 7. 1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4. 7. 17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·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(안 제2조)
 - 당초 5명 ⇒ 10명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, 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 - 「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34호
 - 예고기간: 2024. 7. 2.(화) ~ 7. 8.(월) 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임.

- (안 제2조)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 됨.

-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.

8. 토 론: 없음.

9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원안가결